

개 원 의 를 위 한  
병 의 원 세 무  
길 라 잡 이

1



개원의가  
알아야 할  
개원준비 ABC



---

## 개원의 시작..

---

### 병원의원은 유형은?

---

#### 1. 개인병의원과 법인형태의 병의원

최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병원 또는 의원(이하에서 '병의원'이라 칭함)을 개원하는 유형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금의 측면에서 병의원을 구분하자면 개인사업자 형태인 개인병의원과 법인형태의 병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법인 형태의 병의원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당장의 세금만을 고려하면 세율이 낮은 법인 형태의 병의원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만 병의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 시에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도 개인사업자인 개인병의원에 대한 세금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 2. 개인병의원의 개원유형

매년 상당수의 의사가 개원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장에서의 병

의원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의원은 경쟁적으로 마케팅 비용의 증가, 시설의 고급화, 규모의 대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개원 시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사 1인이 병의원 1개만을 경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병의원에 대한 지분투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인만의 자본으로 병의원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자금의 조달 및 경영에 대한 리스크의 분산 측면에서 최근 의료인 2인 이상이 조합을 이루는 공동개원의 형태로 개원을 모색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 병의원의 개설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단독개원

의사 1인이 수익과 위험을 혼자 부담하는 형태로서 병의원을 개설하는 유형이다.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어 대형의 병의원을 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병의원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개설의사 본인이 전적으로 세금납부를 책임지는 개원형태이다.

### (2) 공동개원

의사 2인 이상이 자본을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로서 일정한 동업계약을 약정하여 병의원을 개설하는 유형이다. 세금은 각자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동업자가 내야 할 소득세에 대하여 그 상대방 동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즉, 각자가 각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 (3)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 개원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이란 수개의 병의원이 동일한 상호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며 각각의 병의원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병의원이라 할 수 있다. 더욱 밀착된 형태의 네트워크

형태의 경우 마케팅 외에도 여러 가지 경영상의 활동을 모두 공유하는 형태도 있다. 즉, 직원채용, 각종 물품구매 등 경영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이다.

의료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마케팅비의 증가이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 주로 비보험진료를 위주로 하는 병과들이 한해에 지출하는 광고비의 수준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부분 인터넷 포털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비를 1개 병의원이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부담이 된다. 이러한 경우 각 지역의 거점별로 여러 병의원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홈페이지도 공유하며 광고를 하게 되면 1개 병의원이 부담하는 광고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등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어느 1개의 병의원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 시 다른 병의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는 단점은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 1인이 1개의 병원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병의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그 병원의 수익을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병의원은 그 개설의사의 책임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병의원 원장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병원경영지원회사란 환자진료를 제외한 전반적인 병의원 경영지원서비스(직원 채용 및 관리, 마케팅, 구매, 보험청구 등)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사는 진료만을 전담하고 여러 가지 경영의 과정은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맡는 형태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MSO는 브랜드와 마케팅을 단순히 공유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의 개인병의원에서 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즉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별도로 두어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지원받는 것이다.

---

## 병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서류절차는?

---

의사가 개인 병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기타 서류절차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서류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 1. 의료기관 개설신고(또는 허가)

의사가 병의원을 개설해서 진료를 시작하려면 우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의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아닌 개설신고)를 신청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또는 신고)필증이 나와야 한다. 허가(또는 신고) 전에 개원해서 진료를 하면 의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병의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또는 신고)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병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서(또는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같이 첨부해서 관할 시·군·구 보건소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이며, 병원 개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또한 개설신고를 한 뒤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사업계획서(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

최근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의 의료관광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의료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료기관), 제19조의4(유치업자)에 따라서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1. 의료기관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2. 유치업자의 경우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사업계획서
-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현재 1억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사업자등록

구체적인 내용은 Point 3에서 별도로 알아보기로 한다.

## 3.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현금영수증 포함)

개원하여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 발급(10만원 이상 의무발급)을 원할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즉시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통상 이러한 절차는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인 VAN(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사)사를 결정하면 그 뱅스가 모든 카드사의 승인절차 등 전과정을 대행하여 준다.

## 4. 요양기관지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받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 지정신청은 강제적이라 할 것이다.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개설허가필증사본(의원은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초 의료보험환자 진료기록부 사본 1부(다만, 개설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60일 이내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기사 자격증 사본



- 금융기관 구좌개설 통장 사본(병의원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
- 의료인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5.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하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 되거나 의약품 등의 사업 관련한 지출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며 향후에도 이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하지 말고 이러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주의 편의 대로 몇 개를 신고하여도 상관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업용 계좌는 개원한 첫 해의 다음 해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해 6월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미신고기간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용 계좌는 신고하였지만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 사업자등록

---

##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유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세무서는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금신고나 신청을 할 때 이 번호를 활용하게 된다.

###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업태는 '보건업', 종목은 진료하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목'으로 하고, 의료행위가 면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14년 2월 이후 진료분부터는 대부분의 미용, 성형시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과세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그 외의 의료용역인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겸업사업자라 한다. 이러한 겸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병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